

해설 : 임현

문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①

☞ 해설 :

* 경비처우급별 처우(규칙 제83조 ~ 제96조)

1. 접견 :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 1일1회, ↘ 월6회, ↘ 월5회, ↘ 월4회
 · 접견실 이외의 장소 접견 - "개"(일반적 허용), "완·일·중"('처우상 필요시')
 cf) 미결수 - 1일1회(변호인과의 접견 제외하고)
 수형자, 사형수 - 월4회
2. 전화 : 개, 완 (횟수추가가능)
 월5회, 월3회
3. 기타 사회적 처우 등
 · 경기·오락회(월2회), 자치생활(취미활동, 자치토론회) : 개, 완
 · 사회견학·봉사, 외부종교행사, 외부문화공연관람 : 개, 완 / 처우상 필요시 '일' 가능
 · 가족만남의날, 가족만남의 집 : 개, 완 / 교화상 특히 필요시 '일' 가능
4. 작업 관련
 · 작업등 지도 보조 : 개, 완
 · 개인작업 : 개, 완
 · 외부직업훈련 : 개, 완
 · 봉사원선정 : 개, 완, 일

※ 정리

- ① '개·완'은 모두 가능
- ② '일반'은 접견, 봉사원선정 가능
 (처우상 필요시) 사회견학·봉사, 외부종교행사, 외부문화공연관람 가능
 (교화상 특히 필요시) 가족만남의날, 가족만남의 집 가능
- ③ '중'은 접견만 가능

② 봉사원 선정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결정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4항).

③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 외부문화공연관람 - "개방, 완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 "일반"(동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문 2.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치료감호법」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 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 ① 치료감호법 제2조는 치료감호대상자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알코올 등의 식음(食飲)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의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조항으로 한정하여 일정한 죄의 종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②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동법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8조).

④ 동법 제4조 제7항.

문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 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정답 ②

☞ 해설 : ㄱ, ㄴ.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관장사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ㄷ. (×) 위원의 신분은 상임위원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동법 제10조).

ㄹ. (○) 동법 제7조 제1항

ㅁ. (×)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즉 관계인에게 소환하여 심문을 할 수 있으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자료 제출의 요청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한한다.

- * 동법 제11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관장사무)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 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 ④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항).

②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③ 환형유치기간은 실무상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 환형유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즉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④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 정답 ①

☞ 해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로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 다른 법률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문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 ② 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 ③ 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 정답 ①

☞ 해설 : ①, ②,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원내 봉사활동에 한하며, 근신처분은 14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그리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는 소년원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임시퇴원의 취소심사 및 결정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즉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의 절차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소년원장이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문 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 ③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②

☞ 해설 :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두는 것은 "교정자문위원회"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적 기관("둘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30조).

- ① 동법 제6조 제1항.
- ③ 동법 제7조 제1항.
- ④ 동법 제8조.

문 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 이다.
- ②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 ③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 ④ 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절대침묵과 정숙을 유지하며 주야구분 없는 엄정한 독거수용을 통하여 회오반성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금방식을 말하며, 필라델피아제, 엄정독거제, 분방제로 불리기도 한다.

펜실베니아제의 장점으로서는 수형자 스스로의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화에 효과적이고, 사생활이 보호되고 동료간 악품감염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별처우에 유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엄정독거로 인하여 고독하며 정신적·심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자살의 가능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이 불가능하여 공동교육이나 작업 등 사회적 훈련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② 펜실베니아제는 엄정독거방식이므로 교정교육이나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이 어렵다. 교정교육이나 운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유용한 것은 혼거제이다.

문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 ③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④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즉 이 때는 법인 아닌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③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동법 제11조 제3항).

문 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추고,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어야 하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자이며,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선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제2항).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3항.
- ②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항.
- ③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2항.

문 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 ② 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 ③ 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 ④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 정답 ③

☞ 해설 : ③ 타르드(Tarde) - 모방의 법칙.

①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 타르드. 철저한 사회적 원인론.

리스트(Liszt) - "범죄원인은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형벌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②, ④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 라카사뉴. 범죄원인으로 사회환경, 특히 경제상황(물가, 실업 등)을 강조.

케틀레(Quetelet)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적 범죄원인론.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즉 혼거수용이 원칙이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한하여 분리수용한다.

③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②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③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 ④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정답 ①

☞ 해설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 2. 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5. 수형자가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 6.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
-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문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분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1,2,3항). 다만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5항).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이외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검사는 부작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동법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작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부작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작명령 청구서의 부분을 피부작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작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작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문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 할 수 있다.
-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정답 ②

☞ 해설 : ㄱ.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ㄴ. (×)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ㄷ. (×)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은 교정시설의 장과 해당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제2항 :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동법 제8조 제2항).

ㄱ.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동법 제11조의2).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 ③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정답 ③

☞ 해설 : ③ 징벌집행의 정지·면제, 징벌의 실효는 소장의 권한사항(동법 제113조, 제115조)이지만, 징벌집행의 유예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동법 제114조).

* 동법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 동법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사용 제한
-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④ 동법 제115조 제1항.

문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 ②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정답 ①

☞ 해설 : ① 도착적인 성기능의 무력화가 아니라 “정상화”이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 ② 동법 제4조 제1항.
- ③ 동법 제4조 제2항.
- ④ 동법 제13조 제1항.

문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ㄷ. 「소년법」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 정답 ③

☞ 해설 : ㄱ. (○) 소년법 제4조 제2항 : 제1항 제2호(촉법소년) 및 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ㄴ. (×) 법정사유[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위와 같은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항).

ㄷ. (×)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14세의 죄를 범한 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ㄹ. (○) 동법 제4조 제3항.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 ③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 ②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면제되는 기간은 “2일간”이다.

* 동법 제72조(작업의 면제) 제1항 :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③ 동법 제71조.

④ 동법 제73조 제2항 :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 ③ 피호송자가 열차.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 정답 ④

☞ 해설 :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수형자 등 호송 규칙 제2조).

① 동규칙 제5조.

② 동규칙 제13조 제1항 :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③ 동규칙 제12조 제2항.